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외장
람	

제1538호 2020. 8. 31(월)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49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1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272호 2020년도 인천광역시 서구 결산기준 재정공시 ----- 6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292호 보상계획공고 ----- 9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301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16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0-149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제25조 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8. 3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폐지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단봉로 150 외 4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0.08.31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

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20-08-31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716-6	인천광역시 서구 단봉로 150 (오류동)	20090922	봉수대로에서 나와 단봉초등학교 앞을 지나는 도로	
2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36-23	인천광역시 서구 비지니스로182번길 22 (청라동)	20101111	도로의 기점이 접한 대로, 로의 기초번호로 도로명부여	
3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4-9	인천광역시 서구 비지니스로194번길 15 (청라동)	20101111	도로의 기점이 접한 대로, 로의 기초번호로 도로명부여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조서

고시일 : 2020-08-31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1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71-42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내로162번길 33-6 (청라)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내로174번길 24-10 (청라)	주출입구 변경	20101111	도로의 기점이 접한 대로, 로의 기초번호로 도로명부여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조서

고시일 : 2020-08-31

원번	도로명주소	폐지 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원척로7번길 4 (가좌동)	건물 멸실	20090706	원척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9-1272호

2020년도 인천광역시 서구 결산기준 재정공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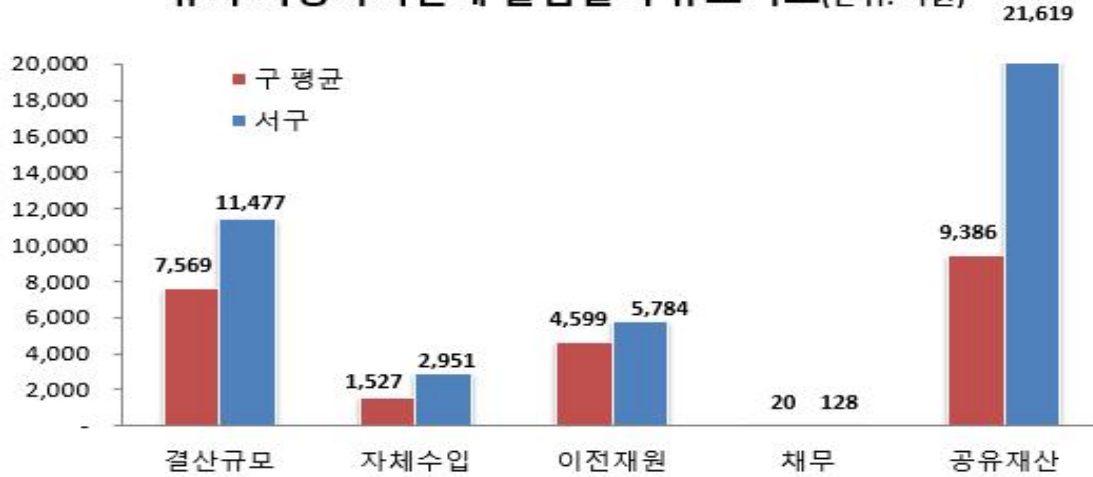
2020. 8. 3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2020년 인천광역시 서구 재정공시(결산)

- ◆ 우리 서구의 2019년도 살림규모 (자체수입 + 이전재원+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조1,477억원으로, 전년대비 1,756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 자체수입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2,951억원이며, 주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39만원입니다.
 - 이전재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5,710억원입니다.
 - 지방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572억원입니다.
- ◆ 2019년 말 기준으로 우리 서구의 채무는 128억원이며, 주민 1인당 지방채무는 24천원입니다.
 - 공유재산은 '19년도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외 229건(1,834억원)을 취득하고, 가좌어린이집 외 39건(76억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 2조1,619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 우리 서구를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평균과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 유사 지방자치단체 유형 : 특광역시, 도, 시(4), 군(4), 자치구(4) 등 14개 유형

유사 지방자치단체 살림살이 규모비교(단위: 억원)



- ◆ 우리 서구의 2019년 살림규모는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7,569억원) 보다 3,908억원이 많습니다.
 - 자체수입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1,527억원)보다 1,424억원이 많으며, 이전재원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4,599억원)보다 1,185억원 많습니다.
 - 채무액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20억원)보다 108억원 많고, 구의 1인당 채무액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5천원)보다 19천원 많습니다.
 - 공유재산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9,386억원)과 비교하여 12,233억원이 많습니다.

-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서구의 재정은 지속적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대와 지방채무 감축 등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으로 유사 지방자치단체보다 높은 자산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우리 서구는 지속적인 인구증가가 예상되므로 도로·공원·녹지 등 필수 기반시설의 세출 수요가 높으며, 문화·복지시설 건립 등 신규 시설수요와 사회복지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역으로 재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계획적이고 투명한 재정운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seo.incheon.kr/open_content/main/open_info/finance/local.jsp

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주민의견수렴 게시판에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담 당 자 : 서구청 기획예산실 최상훈(032-560-4054)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0 - 1292호

보 상 계 획 공 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193호(2020.6.8.)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원신근린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면적상이, 오기, 누락 등)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이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8. 3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익사업의 개요

- 가. 사업의 명칭 : 원신근린공원 조성사업
- 나. 사업시행지역 :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산34-7번지 일원
- 다.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라. 보상업무 수탁(수행)기관 : 한국감정원(보상사업처 북부보상사업단)
- 마. 사업 규모 : 79,089m²
- 바. 사업시행기간 : 2020. 6.8. ~ 2022.12.31.

2. 금번 보상대상 내역 : 별첨

- 편입 토지 지번 및 면적은 지적분할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편입 토지 상 지장물 포함.

3. 열람 및 이의제기 기간

가. 열람기간 : 2020. 8.31.(월) ~ 2020. 9.14.(월)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한국감정원 북부보상사업단 (TEL:032-569-7566 / FAX:032-569-7569)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315번길 15-1(심곡동), 화정빌딩 201호
- 인천광역시 서구청 공원녹지과 (TEL:032-560-4494 / FAX: 032-560-2781)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 4층 공원녹지과 공원조성팀

다. 이의제기 방법 및 보상 참고사항

- 토지 또는 물건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이의제기서를 작성하여 열람 기간 내 열람 장소로 서면 또는 팩스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보상계획열람·공고 대상이라 하더라도 사업계획의 변경 및 과거에 보상을 하였을 경우, 불법점용 등에 의거 편입면적 변경 및 보상대상 제외 될 수 있습니다.

4. 보상시기 : 추후 우편으로 개별통지 예정.

- 개인별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 내역, 보상액, 보상절차, 협의 기간 등의 구체적 사항은 손실보상협의 요청서와 함께 보상시기에 개별 통지.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 산정 및 통지

보상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68조 및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액을 결정하여 협의요청서와 함께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

나. 보상금 지급

보상계약 체결하고 토지 등을 소유권 이전한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지급.

다. 보상절차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보상협의요청(보상금개별통지) → 협의(계약 체결) →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지급 → (협의불성립시)수용재결 → 재결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 이의재결 또는 소송

6. 감정평가업자 추천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및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업자 각 1인을 추천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고 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감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감정평가업자 추천서(양식-예시) ▶

토 지 소재지	지 번	편입(예정) 면적(m ²)	토지 소유자			날 인 (서명)	전화번호 (주택 또는 휴대전화)	감정평가 업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앞자리	주 소			

※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의 자필로 서명 및 날인(법인인 경우 직인 날인) 하여야 하고,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7. 기타 사항

가. 열람기간 내에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에는 작성된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토지 또는 물건조서의 내용대로 보상을 실시하게 됩니다.

나. 이 보상계획은 토지 또는 물건조서의 내용과 함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 불명으로 인하여 개별통지를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 다. 해당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업무는 ‘토지보상법’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보상전문기관에 위·수탁되어 한국감정원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 라. 편입토지에 존재하는 분묘의 연고자 및 경작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 본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세목 위에 존재하는 지장물 내역 등은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토지조서

구분 번호	소재지	지번		공 지 분 류	면적		소유자		관계인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소유자 분	이름	이름	권리관계
1	서구 석남동	산117-5	산117-5	임야	2,805	2,805	1/1	이○덕		
2	서구 석남동	산117-19	산117-19	임야	3,889	3,889	1/1	인천광역시		
3	서구 신현동	산34-2	산34-2	임야	6,545	6,545	1/1	서○현		
4	서구 신현동	산34-3	산34-3	도로	8,487	3.71	1/1	인천광역시		
5	서구 신현동	산34-5	산34-5	임야	8,880	8,880	1/1	김○찬		
6	서구 신현동	산34-7	산34-7	임야	16,250	16,250	21/420	변○미		
							21/420	변○윤		
							21/420	이○은		
							21/420	이○훈		
							21/420	김○후		
							21/420	김○연		
							21/420	마○선		
							21/420	마○원		
							14/420	은○우		
							14/420	은○수		
							14/420	은○우		
							1/28	정○구		
							1/28	정○구		
							1/56	정○구		
							1/56	정○구		
							1/56	정○구		
							1/56	정○구		
							1/56	조○호		
							1/14	미합중국인 정○선		
							1/14	정○원		
							1/14	미합중국인 정○원		
							1/14	미합중국인 정○호		
							1/14	정○문		
7	서구 신현동	산34-8	산34-8	임야	6,107	6,107	1/2	서○현		
							1/2	송○자		
8	서구 신현동	산34-10	산34-10	도로	213	17.12	1/1	인천광역시		
9	서구 신현동	산34-13	산34-13	도로	127	127	1/1	인천광역시		
10	서구 신현동	산34-14	산34-14	도로	615	28.8	1/1	인천광역시		
11	서구 신현동	산34-16	산34-16	임야	10	10	1/1	인천광역시		
12	서구 신현동	산34-19	산34-19	임야	2,497	2,497	1/1	인천광역시		
13	서구 신현동	산34-20	산34-20	임야	1,522	1,522	1/1	인천광역시		
14	서구 신현동	산34-21	산34-21	임야	884	884	1/1	인천광역시		
15	서구 신현동	산34-22	산34-22	도로	22	22	1/1	인천광역시		
16	서구 신현동	232-12	232-12	임야	859	859	1/1	인천광역시 서구		

17	서구 신현동	232-14	232-14	도로	151	151	1/1	인천광역시		
18	서구 원창동	202-8	202-8	잡중 지	5	5	1/1	임○남		
19	서구 원창동	202-9	202-9	도로	7	7	1/1	국(국토교통부)		
20	서구 원창동	202-10	202-10	도로	9	9	1/1	국(국토교통부)		
21	서구 원창동	202-11	202-11	도로	21	21	1/1	국(국토교통부)		
22	서구 원창동	89	89	전	605	605	1/1	재단법인세계기독교 ○재단		
23	서구 원창동	90-1	90-1	전	105	105	1/3	안○성	재단법인세계기독교○ 재단	가처분
							1/3	안○복	재단법인세계기독교○ 재단	가처분
							1/3	권○원		
24	서구 원창동	90-2	90-2	전	17	17	1/3	안○성	재단법인세계기독교○ 재단	가처분
							1/3	안○복	재단법인세계기독교○ 재단	가처분
							1/3	임○남		
25	서구 원창동	90-3	90-3	전	6	6	1/3	안○성	재단법인세계기독교○ 재단	가처분
							1/3	안○복	재단법인세계기독교○ 재단	가처분
							1/3	임○남		
26	서구 원창동	92-2	92-2	전	214	214	1/1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27	서구 원창동	92-4	92-4	전	1	1	1/1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28	서구 원창동	92-5	92-5	전	2	2	1/1	인천광역시 서구		
29	서구 원창동	93-15	93-15	전	2,108	2,045. 37	1/1	인천광역시 서구		
30	서구 원창동	93-16	93-16	전	146	146	1/1	인천광역시 서구		
31	서구 원창동	93-17	93-17	임야	51	51	1/1	인천광역시 서구		
32	서구 원창동	93-18	93-18	전	24	24	1/1	국(기획재정부)		
33	서구 원창동	93-19	93-19	전	1,374	1,374	1/1	국(기획재정부)		
34	서구 원창동	93-20	93-20	전	2	2	1/1	인천광역시 서구		
35	서구 원창동	93-21	93-21	전	587	587	1/1	인천광역시 서구		
36	서구 원창동	93-23	93-23	임야	708	708	1/1	재단법인세계기독교 ○재단		
37	서구 원창동	95-2	95-2	전	853	853	1/1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38	서구 원창동	산59-2	산59-2	임야	8,977	8,977	3901/ 11702	백○규		
							7801/ 11702	김○남		
39	서구 원창동	산59-6	산59-6	임야	1	1	1/1	인천광역시 서구		
40	서구 원창동	산59-7	산59-7	임야	383	383	1/1	인천광역시 서구		
41	서구 원창동	산60-1	산60-1	임야	1,261	1,261	1/1	임○남		
42	서구 원창동	산61	산61	임야	2,551	2,551	1/1	인천광역시 서구		
43	서구 원창동	산61-2	산61-2	임야	3,133	3,133	1/1	강○구		
44	서구 원창동	산61-3	산61-3	임야	59	59	1/1	인천광역시 서구		
45	서구 원창동	산61-4	산61-4	임야	390	390	1/1	인천광역시 서구		
46	서구 원창동	산62	산62	임야	333	333	1/1	이○영	국(인천세무서)	압류
									롯데카드 주식회사 (인천대순재권지점)	가압류
									주식회사○전자	근저당권

47	서구 원창동	산62-2	산62-2	임야	230	230	1/1	재단법인세계기독교 ○재단		
48	서구 원창동	산62-3	산62-3	임야	15	15	1/1	이○영	국(인천세무서)	압류
49	서구 원창동	산63	산63	임야	1,893	1,893	3/5	국(산림청)		
							42/455	조○진		
							28/455	이○재		
							12/455	정○숙	○유동화전문유한회사	가압류
							8/455	조○주		
							8/455	조○제		
							14/455	여○훈		
							14/455	여○훈		
							28/455	남궁○		
							28/455	조○희		
50	서구 원창동	산63-2	산63-2	임야	1,366	1,366	3/5	국(산림청)		
							42/455	조○진		
							28/455	이○재		
							12/455	정○숙	○유동화전문유한회사	가압류
							8/455	조○주		
							8/455	조○제		
							14/455	여○훈		
							14/455	여○훈		
							28/455	김○종		
							28/455	조○희		
51	서구 원창동	산63-3	산63-3	임야	47	47	273/ 455	국(산림청)		
							28/455	남궁○		
							14/455	여○훈		
							14/455	여○훈		
							28/455	이○재		
							12/455	정○숙	○유동화전문유한회사	가압류
							8/455	조○제		
							28/455	조○희		
							8/455	조○주		
							42/455	조○진		
52	서구 원창동	산64-3	산64-3	임야	2	2	1/4	문○수		
							1/4	정○용		
							1/4	박○생		
							1/4	오○자		
53	서구 원창동	산64-4	산64-4	임야	1,068	1,068	1/4	문○수		
							1/4	정○용		
							1/4	박○생		
							1/4	오○자		

※ 해당토지상에 포함되는 물건 일체 포함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20 - 1301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제안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8. 3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공무원 제안 규정」 개정사항을 규칙에 반영하여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인사상 특전 부여 규정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무원 제안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다른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을 요청받은 경우 인사상 특전부여 근거규정 마련(안 제15조의3제3항)
- 제안 인센티브관련 현행 제도 보완하여 부상금을 받은 제안자의 인사특전이 가능토록 개선(안 제16조제5항)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9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청 총무과 전화 560-4514, 팩스 560-2710)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 제안이유

2020. 4. 14일 일부 개정된 「공무원 제안 규정」 개정사항을 규칙에 반영하여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인사상 특전 부여 규정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공무원 제안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다른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을 요청받은 경우 인사상 특전부여 근거규정 마련(안 제15조의3제3항)
- 나. 제안 인센티브관련 현행 제도 보완하여 부상금을 받은 제안자의 인사 특전이 가능토록 개선(안 제16조제5항)
-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띄어쓰기 등) 정비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공무원 제안 규정」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라. 기 타

- 1) 개정안 : 별지참조

인천광역시 서구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가목 중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를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보완기간 내”를 “보완기간”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12조 중 “채택여부”를 “채택 여부”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700만원이상”을 “700만원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500만원이상”을 “500만원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300만원이상”을 “300만원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100만원이상”을 “100만원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10만원이상”을 “10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15조의3제2항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구청장은 제안과 관련하여 다른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제4항 중 “순으”를 “순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부상금 및 상여금”을 “상여금”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부·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수정·보안”을 “수정·보완”으로 한다.

제20조 중 “구청장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실시후”를 “실시 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결정일 부터”를 “결정일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 성과”를 “기간에 제안의 실시성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다른”을 “따른”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제안”이란 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p> <p>가. 타인이 취득한 <u>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u>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p> <p>나. ~ 마. (생략)</p> <p>2. ~ 7. (생략)</p> <p>제8조(제안의 보완) ① (생략)</p> <p>② 제1항의 <u>보완기간</u>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안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p> <p>제11조(의견조회 등) ①·② (생략)</p> <p>③ 제1항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p>	<p>제3조(용어의 정의) ----- -----.</p> <p>1.----- ----- ----- ----- -----.</p> <p>가. ----- <u>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u>에 속하는 것 또는----- ----- -----</p> <p>나. ~ 마. (현행과 같음)</p> <p>2. ~ 7. (현행과 같음)</p> <p>제8조(제안의 보완)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보완기간</u>----- -----.</p> <p>제11조(의견조회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p>

상 500만원 미만

4. 장려상: 하나의 제안당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5. 노력상: 하나의 제안당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② (생략)

제15조의3(인사상 특전) ① (생략)

② 2명의 공동제안의 경우 주제안자 1명에 한하여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며, 3명 이상 공동제안의 경우 인사상 특전은 부여하지 아니한다.

<신설>

제16조(상여금 지급) ① ~ ③ (생략)

④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여금은 제안자가 지정한 사람 및 상속인의 순서로 지급한다.

⑤ 인사상 특전을 받은 제안자는 부

상 -----

4. ----- 100만원 이상 -----

5. ----- 10만원 이상 -----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의3(인사상 특전) ① (현행과 같음)

② -----
----- 한정하여 -----

③ 구청장은 제안과 관련하여 다른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 받은 경우에는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상여금 지급)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순서 -----

⑤ -----

상급 및 상여급을 지급 할 수 없다.
 제18조(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승계 및 보상)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19조(관리기간) ① (생략)
 ② 채택제안이 채택 결정된 후 제20조에 따라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경우 그 수정·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관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20조(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구청장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면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실시성과의 평가) ① (생략)
 ② 소관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평가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상여급-----.
 제18조(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승계 및 보상) ① (현행과 같음)
 ② -----
 -----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관리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
 ----- 수정·보완-----.

제20조(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구청장-----
 -----.

제23조(실시성과의 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② -----
 ----- 별지 제5호서식-----
 -----.
 ③ -----.

1. 예산절감 또는 수입 증대: 제안의 실시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채택 결정일 부터 3년간

④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 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24조(실시성과의 평가방법) ①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다른 예산의 절감액 및 구 수입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려면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는 공제하여야 한다.

② (생략)

1. -----
실시 후 -----

2. ----- 결정일부터 -----

④ ----- 기간에 제안의 실시 성과-----

-----.

제24조(실시성과의 평가방법) ① -----
----- 다른 -----

-----.

② (현행과 같음)

의견제출서	
1. 자치법규명	
2.	성명(단체명/대표자)
	주 소
3. 의견	
4. 기타	
<p>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의견 제출인 주소</p> <p style="text-align: right;">(전화 :)</p> <p style="text-align: right;">성명 (서명 또는 인)</p> <p>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p>	
비고	<p>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p> <p>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p> <p>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p>

※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기재